

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- 새마을소득사업 융자대상의 선정 및 융자금 상환연기등 중요안건을 심의 처리를 위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
-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어
- 금번 개정을 통해 위원의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공무원, 새마을소득사업 관련 단체임원, 농업관련 단체장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규정(제3조제3항)
- 위원회의 기능은
 1. 새마을소득사업 융자대상자 선정
 2.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상환 및 상환기일 연장에 관한 사항
 3. 기타 새마을소득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등을 심의토록 규정(제3조제6항)

□ 검토보고

- 동조례안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보완하려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과 조문내용등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
-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으로 관계공무원인 농업기술센터소장, 건설과장, 농축산과장과 새마을소득사업 관련 단체임원 및 농업관련 단체장으로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, 부녀회장, 농업경영인대표, 농촌지도자연합회장등으로 구성하고
- 그 주요기능 및 임무가 융자금지급 대상자의 선정 등 실무적인 내용을 심의하고 있는 실정임.